# 2025 년도 학교 급식비 등 조성 (사립학교 취학자 등 지원 급부금) 공지

신주쿠구 교육위원회는 육아 세대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사립학교 취학자 등에 대해 구립학교의 급식비 상당액을 급부금으로 지급합니다.

#### 〈 동의사항 〉

- ① 본 급부금 지급 시에 신주쿠구 교육위원회가 필요한 공부(公簿) 등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. 또한, 공부(公簿)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② '확인서'에 미비 사항이 있어 신주쿠구 교육위원회로부터 보완이나 수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합니다. 또한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③ 본 급부금을 수급한 후 '확인서'의 기재 사항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수급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급부금을 반환합니다.
- 신주쿠구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는 급부 업무에서 본 급부금의 수급 시에 신고한 이체 계좌를 사용함에 동의합니다.

## 기재예





- (1) 확인서
- (2) 신주쿠구 교육위원회 앞
- (3) 동의사항
- (4) 본 급부금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
- (5) 본 급부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(세대주)
- (6) 지급 금액
- (7) 전화번호
- (8) 세대주 성명
- (9) 이체 계좌

## 1 성명 등을 기입

기입일, 전화번호, 본 급부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(세대주)의 성명을 기입해 주십시오.

#### ② 이체 계좌를 기입

여기에 금융기관명, 지점명 또는 지점 번호, 계좌 번호, 계좌 명의(가타카나)를 기입해 주십시오. 유초은행과 그 외의 금융기관은 기입란이 다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③ 이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

금융기관명, 지점명 또는 지점번호, 계좌 번호, 계좌 명의(가타카나)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 계좌 통장 또는 현금카드 **사본**을 첨부해 주십시오.



# 대리로 수급하는 경우 ▼

'본 급부금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' 또는 '본 급부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 (세대주)' 이외의 명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

- ① 세대주 성명, 대리인 성명, 대리인 전화번호,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입해 조심시오
- ② '본 급부금의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(세대주)'과 '대리인'의 본인확인서류 **사본**을 각각 준비해 주십시오.
- ③ 기입, 첨부가 완료된 '확인서'와 ②의 서류를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제출해 주십시오.

# 절차 등의 문의처

신주쿠구 교육위원회 사무국 학교운영과 급부금 담당 (신주쿠구청 제1분청사 4층)

**203-5273-4297** 

【접수 시간】 평일 오전 8시 30분~오후 5시